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: 14일
------	------	------------

청구인 (수급자격자)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

사업장에 고용된 경우	④ 사업장명	⑤ 대표자 성명			
	⑥ 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	⑦ 채용일(입사일)	⑧ 채용 확정 통보받은 날	⑨ 월평균 임금액	원	
	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	⑪ 구직급여 수급 직 전 최종 이직 사 업장과 재취직 한 사업장 사 업주의 관계	☐ 영업을 양도·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☐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☐ 합병·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☐ 해당 없음		

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	⑫ 사업장명	⑬ 대표자 성명
	⑭ 소재지 (전 화 번 호:)	
	⑮ 사업 시작일	⑯ 사업자등록번호
	⑰ 업종	

지급계좌	계좌번호:	은행명:	예금주:
------	-------	------	------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, 제86조제1항·제2항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청구인 제출서류	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.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가.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.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(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: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.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: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사업계획서 나.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,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.

처리	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		산출명세						
			지급액						
	미지급 사유								
결재	담당		팀장		과장		청장 (지척장)		결재 연월일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※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공지사항

- 1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마목에 따라, 2025년 7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9호,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,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2.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2.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 ~ ③란은 청구인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- 2. ④ ~ ⑪란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습니다.
- 3. ⑫ ~ ⑰란은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적습니다.
- 4. ⑦란은 실제 채용된 날을 적습니다.
- 5. ⑧란은 전화, 문서, 문자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.
- 6. ⑨란에는 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, 제수당 포함 월 평균 임금(세금 등 각종 공제 전의 금액)을 적습니다. 다만,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습니다.
- 7. ⑩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, ⑪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이 재취직한 사업장과 ⑩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.
- 8. ⑮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“개업 연월일”을 적습니다.
- 9. ‘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’의 예시
 - 임대차계약서, 과세 증명자료(세금계산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전표 등), 보수명세서(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)
- ※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완화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. 이 경우에도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처리절차

